

## 시험 관리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(시험)에 의한 시험 및 시험감독 관리와 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 (2018.2.19.개정)

**제2조(적용)** 이 규정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적용한다.

### 제3조(시험운영 및 감독)

① 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·강사로 한다. 다만, 담당 교·강사의 부득이한 사정(질병, 천재지변, 안전사고 등)으로 시험 감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조교 및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. (2017.12.11.개정)

② 1개 고사장 응시 학생수가 60명 이상인 강좌의 경우 시험감독관 2명을 배정한다.

③ 시험감독관은 시험 응시자에게 반드시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시험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
④ 시험응시 전 부정행위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 제품(휴대폰 및 태블릿 PC 등)은 반드시 전원을 끄고, 책상(주위 빈자리 책상 포함) 위에는 신분증, 문제지, 답안지, 필기구 등 허용된 물품 이외의 물건(책, 노트, 쪽지 등)은 일체 올려둘 수 없도록 지도한다.

⑤ 시험시간동안 부득이 퇴실할 경우 시험감독관의 허락 하에 조교와 동행할 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휴대폰 등 소지품은 지참할 수 없다.

⑥ 시험감독관은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를 시험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 유출 되지 않도록 하며, 제출하는 응시 학생의 답안지 첫 장에 학번, 성명, 검인란을 확인한다.

⑦ 시험감독관은 시험 시간동안 시험장소를 떠날 수 없다.

⑧ 교과목 담당 교·강사는 장애학생들의 시험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 학생들에게 공지 후 장애학생들의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시각 장애학생들에게는 확대문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⑨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정기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험 중단 및 연기를 할 수 있다. (2017.12.11.신설)

⑩ 9항의 사유로 시험이 연기될 경우 교무처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일정을 확정 후 공지한다. (2017.12.11.신설)

### 제4조(부정행위자 처리)

①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와 사전에 준비된 부정행위 방법을 통해 시험을 응시한 자 및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부정행위자로 인정한다.

②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로 인정된 자의 답안지를 수거한 후 불이익을 안내하고 즉시 퇴실 조치한다.

③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로 인정된 자의 답안지 상단에 적색으로 “부정행위자”라고 표시하고 서명(날인) 한다.

④ 담당교수는 부정행위로 접수된 답안지를 0점 처리하며, 부정행위자에게 해당 교과목의 시험점수를 취득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